

유연학기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49
제정일자	2020.09.25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2020.09.25.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 12조에 의거 유연학기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'유연학기'란 교과목, 교육과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학칙 제13조의 수업일수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수업 형태 또는 국가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학기를 말한다.
- 제3조(운영방법) 유연학기제 운영은 각 학기의 전반부 8주 또는 후반부 8주 수업으로 운영한다. 단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4조(시행 교과목) ① 유연학기제 실시가 가능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- 1. 집중수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과목
 - 2. 정규학기에 현장실습이 많은 학과의 전공 교과목
 - 3. 진로선택, 취업준비 교과목
 - ② 학과별 시행 대상교과목은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다.
- 제5조(신청 및 승인) ① 전공교과목의 집중수업 운영 신청은 학과시간표를 포함하여 유연학기 제 승인신청서 [별지서식 1호]를 작성하여,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 교양교과목은 집중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교양교육센터에서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③ 총장은 수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수업의 형태로서 유연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.
 -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별 집중수업 운영 교과목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- 제6조(강의계획서) 유연학기로 집중수업 운영이 허가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에 집 중수업 실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, 수강 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수업시간)** 시간표를 편성할 때에는 학점 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시간표의 중복이 없도록 한다.
- 제8조(평가, 개선 및 환류) 유연학기제 운영 담당 교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의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환류를 실행한다.
 - ① 유연학기제 운영 담당 교수는 집중수업 실시의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교과목 품질개선



유연학기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49
제정일자	2020.09.25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보고서(CQI)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집중수업은 강의평가에 의하여 환류하고 개선하여 보완한다.

제9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유연학기 운영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49
제정일자	2020.09.25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[별지 제1호 서식]

유연학기제 승인신청서

학과명: 00000000

교과목명	A과목 :	B 과목 :
학점/시수(이론/실기)	3(0/3)	3(3/0)
담당교수	이름	이름
대상학생	()학년 ()명	()학년 ()명
강의개요 및 목적	1. A과목 : 2. B과목 :	
유연학기제 도입 사유	1. A과목 : 2. B과목 :	

[붙임] 1. 각 교과목 강의계획서

- 2. 수업 시간표
- 3. 학과 회의록

위와 같이 0000학년도에 유연학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.

20 년 월 일

학과/계열장 : ______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